

〈散稿〉

## 다양한 전공, 그 특장을 융합하는 로스쿨 강의 - 첫 학기의 작은 경험 -

韓寅燮

### I. 두 개의 강의모델

로스쿨의 가장 큰 특색은 학생의 다양성에 있다. 학부를 졸업하고 곧바로 들어온 학생도 있고, 기업에 있다가 혹은 회계사나 변리사를 하다 로스쿨에 온 학생도 있다. 전공은 참으로 다양하다. 뇌공학, 컴퓨터, IT, 철학, 수학, 약학, 변리사, 의류학과, 경영, 경제, 심리학과 학생들이 법학부를 졸업한 학생들과 한 강의에서 만난다. 법령 및 인가기준상으로 적어도 1/3 이상은 법학 이외의 전공자로 채워야 한다고 했지만, 서울대 1학년의 경우 2/3가 비법학도이다. 이들 다양한 학생이 한 수업에 참가할 때, 수업의 수준,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야 할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겨난다.

교수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법학우위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A교수는 학생들을 법학/비법학군으로 (마음속으로) 나눈다. 전자는 법학을 아는 학생이고 후자는 잘 모르는 학생이다. 이 경우 비법학군은 뭔가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3년 안에 법학교육을 해낼까 의구심을 갖는다. 반면 B교수는 다양성융합 모델을 취한다. 여러 전공의 준재들이 한 강의실에 모여, 각자의 특장을 한 강의 속에 융합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서 비법학의 전공들은 열등성의 요인이 아니라, 법내용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더해가는 존재이다. 전공이 서로 다양한 만큼이나 분업적으로 협력하여 지식융합을 이루어낸다. 로스쿨은 물론 법학우위모델이 아니라 다양성융합모델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sup>1)</sup> 학생들의 관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심과 전공이 현격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로스쿨의 사회적 목표가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5년 동안 로스쿨 도입을 즐기치게 주장해 오면서, 나는 로스쿨이 성사되었을 때 펼쳐질 강의에 대해 이런저런 구상을 해왔다. 2009년 1학기에 안식만년을 누렸기에, 내게 로스쿨 첫 학기는 2학기의 [형법2(각론)] 강의가 되었다. 38명의 학생들이 신청했다. 그런대로 학생들과 교감하기엔 적당한 인원이었다. 학생들의 전공은 예상대로 참으로 다종다양했다. 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한 학기 수업을 하면서, 그들의 다양성을 가능한 강의 속에 녹여내려는 시행착오를 했고, 그 가운데 애초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그 가능성은 강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강의소감을 글로까지 적게 되는 동력이 되었다.

나의 실제수업이 만족할 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것은 준비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법학지식 부족 탓일 수도 있고, 능숙한 조율사로서의 역량 부족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문제일 뿐이다. 모든 교수들은 자신의 교수법을 개선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무언가 새로운 실험을 한다. 특히 로스쿨을 맞아 그 실험은 거의 심리적으로 강제되는 수준이다. 서투른 실험일지라도, 교수법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교수들 서로 간에 배워가는 것이기에, 나의 서투름은 다른 교수들의 세련된 지적을 통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이 글을 쓴다.<sup>2)</sup>

강의가 학생과의 상호작용이어야 한다면, 강의의 소감도 그러할 것이다. 나는 이 글의 초안을 학생들에게 보냈고, 여러 학생들이 그에 대해 응답했다. 그 응답도 일부 소개하여 느낌을 공감했으면 한다.

---

2) 전임교원 교수법개발을 위한 한 방법으로 로스쿨교수의 상호연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비방은 동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륙법계의 전통하에 미국식 로스쿨 교수법을 접목시켜야 하는 우리의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교내외 교수들의 상호경험교류와 대화·토론을 통한 교수법 연수·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인용은 한인섭 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인가신청서상의 모델사례의 발굴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2009, 124쪽 (중앙대의 사례).

## II. 다양한 전공을 한 강의에 녹여내기

처음 학생들의 내력과 희망을 알아야 했다. 첫 수업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종래의 법학도와는 확연히 달랐다. 자신의 특장(소위 학생들이 ‘스펙’이라 부르는)이 뚜렷했고, 장래도 ‘판사/검사’의 사법관료(law bureaucrat) 중심이 아니라 전공을 바탕으로 한 법전문가(legal profession)를 지향하는 점이 뚜렷했다. 자기소개서의 핵심, 즉 전공 및 주요경력을 출석부의 성명란 옆에 기입하여 활용했다.

강의는 75분을 한 단위로 구성한다. 먼저 개요 설명을 하고, 곧바로 <도입판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학생은 사안의 개요, 법적 쟁점, 하급심의 판시, 대법원의 판시, 그 차이점, 자신의 논지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질문에 대해 답변이 충실하지 않으면 질의응답식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데, 거의 모든 학생들은 충실히 예습을 해온 편이었고, 어느 정도의 수준의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 답변은 후속 질문으로 이어진다.

기본적 사례에 대해서는 대개 출석부 순서대로 질문해간다. 그러다 사실관계에서 비교적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을 만나면, 그 전문분야와 가장 가까운 학생에게 심화질문을 던진다. 성폭력에서 남자/여자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차원이 오면 생명과학을 한 학생을 찾아 질문한다. 갑자기 받은 질문이라 충실한 답변이 나오기가 충분치 않을 때 나의 요청에 의해, 혹은 그 학생의 자발적 요청으로, 다음 시간에 짧은 시간(약 3~5분)의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부여한다. 프리젠테이션은 단조로운 강의에 풍부함과 전문성을 더해준다. 이런 기회가 몇 번 쌓이면서, 상이한 전공의 효용이 재발견된다. 사실관계 인식에 정확성을 더해주고, 기존의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전통적인 재물의 개념이 도전받고, 기업배임에 대한 거친 논전이 야기되기도 하고, 음란물에 대한 전통적 해석의 맹점이 본격적인 토론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강의가 중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 전공분야의 관점에서 기존 판례의 문제점을 뚜렷이 인식하고,<sup>3)</sup>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갈망하고 있음을 그들의

3) 예컨대 다음 학생(약학 전공)의 이메일 참조. “제가 1년 법학을 공부하면서 의약품에 관한 법학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리서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의 연구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콘터간 사건(탈리도마이드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연구하고 검토한 문헌을 찾아 보질 못했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광학이성질체를 이용한 특허 연장 시도를 하는 것을

이메일에서, 강의실에서의 질문에서, 느낄 수 있었다. 전문성의 영역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교수로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수마다 지식의 단처(短處)가 있기 마련이다. 평소 주식거래 한번 안 해본 나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기업배임의 세계에 이르면 대충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엔 학생들의 경제/회계/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아예 학생들에게 기업형 배심죄에 대한 사례연구의 발표를 일임했다. 학생들은 짧은 시간, 부하많은 로스쿨 강의의 준비시간을 쪼개어, 열정적으로 준비했고 발표했다.<sup>4)</sup> 시간이 더 주어졌으면 토론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전공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전공의 배경지식이 법적 쟁점 및 대상사례의 이해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시간이 더 허용된다면, 형법각론의 모든 쟁점에 대해, 각 전공의 특징을 살려 내 다채로운 논쟁이 가능할 것이란 예감이 든다.

### Ⅲ. 로스쿨의 강의방식—얼마나 바뀌어야 할까

로스쿨의 교수법은 한결같이 “사례” 중심의 소크라테스식 방법, 혹은 랑델식의 교수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수는 고약한 질문자의 역할을 하고, 학생의 답변에 대해 적대적 상대방측 변호사의 입장에서 반론을 편다. 학부에서와 달리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법적 사고를 촉진하는 자 (facilitator)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 2007년 전국 각 대학이 제출한 법학

---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와 같은 비지니스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문을 1개 발견했을 뿐입니다.”

- 4) 학생들이 발표한 것을 토대로 과제물로 정리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종래의 법학도에 게서, 전문성에 토대를 둔 이러한 제목의 과제물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 △ 배임죄에서의 손해의 개념과 경영판단의 원칙 - 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도 4640 판결 [SK증권 사건]
  - △ 배임죄 성립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08.6.19. 선고 2006도4876 판결 평석
  - △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 △ LBO와 배임죄 - 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도7027 판결을 중심으로-
  - △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이사의 배임죄 성부검토 - ‘이해관계자모델’의 관점에서-
  - △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의 배임행위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사건-
  - △ 위험한 LBO, 모두 배임죄인가? - 2004도7027, 2007도5987을 중심으로-
  - △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에서의 배임죄의 성부

전문대학원 인가신청서에는 한결같이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2학기 강의를 한 시점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교수들에게 되 물을 수 있다. 과연 위 주장대로 강의했느냐고, 그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 이냐고 말이다. 긍정적 대답을 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수(십)년간 강의식 방법에 길들여져 있는 교수 탓이기도 하고, 또 다른 탓도 있을 것이다. 다른 방식 으로 질문할 수도 있다. 종래의 지식전달식 강의법을 그대로 고수한 경우, 마음이 편했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어쨌든 뭔가 새로워지려고 노력했다고 답 할 것이다. 어떤 교수법을 취하든, 교수법은 로스쿨 교수의 화두로 자리잡게 된 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의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여러 신청대학 교 수들의 샘플강의를 청취할 드문 기회를 가졌던 만큼 교수법을 둘러싼 고심은 더 했다.

질의응답식 강의를 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강의교재가 준 비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예습해올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공유 된 자료독해의 기초 위에 질문과 답변을 자기나름대로 소화/분석/비평하게 될 것 이다. 응답학생이 적극 참여자라면, 청취 학생들도 수동적 참여자이다. 그래서 강 의교재를 사전에 제작해야 했다. 다행히 서울대 형법교수 팀들은 5인 합작으로 <로스쿨 형법총론>, <로스쿨 형법각론> 교재를 제작할 수 있었다.<sup>5)</sup> 짧은 시간 안 에 만들어진 만큼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았지만, 그 부족함도 강의용으로 활용하 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학생들의 수업몰입도는 매우 높았다. 모든 학생 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켜는 것이 학부수업과 다른 풍경이었다. 교재의 예습에 대 해 학생들은 철저했고, 그 때문에 질의응답식 강의를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둘째, 학생은 질문에 대답하고 시험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강의참여자(lecture partner)의 역할을 한다. 한 학생의 답변은 다른 학생에게 지식을 주고, 자극한다. 언제 질문이 날아들지 모르기에 질문받는 타인의 고통은 결코 남의 일로 여겨지 지 않는다. 또한 학생의 답변은 다른 학생들의 귀에 ‘들려야’ 한다. 학생이 크게 답하든지, 아니면 마이크가 제공되든가 해야 한다. 어느 쪽에서 답변을 해도 소리가 잘 들리는 칠판강의실이라면 최상일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학생들의 적극 참여를 위해서는 한 강의실의 수강생 수가 적정해야 한다. 학부에서 흔히 보는 100명 이상의 대형강의로는 질의응답식 강의는 억지스럽다.<sup>6)</sup> 어떤 경우든

5) 신동운·한인섭·이용식·조국·이상원 등 5인은 <로스쿨 형법총론>, <로스쿨 형법각론>을 박영사, 2009년에 펴냈다.

6) Harvard Law School에 1년 머물면서, 하버드의 발전전략을 읽어본 적이 있다. 거기서 HLS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학생규모(class size)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필수과목의

한 강의실에는 50명 이상의 규모는 그리 만족스러울 것 같지 않다. 반면 인원이 너무 적으면 다양성의 이점을 누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질의응답식 방법을 취할 때 가장 큰 애로점은 진도를 충분히 낼 수 없다는 우려가 아닌가 한다. 안 그래도 늘 가르쳐야 할 내용에 비해 강의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예측할 수 없는 답변을 따라가다 보면 가르쳐야 할 양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에 대해서는 강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고 답하고 싶다. 교수가 발화(發話)했다고 학생들이 다 수화(受話)하는 것은 아니며, 하물며 다 소화(消化)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의 습득은 일차적으로 자기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강의는 지식습득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로스쿨용 교재의 진도에 맞추어, 기존의 교과서를 자습해야 한다.

강의는 망라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초점적 이슈에 집중하는 방식을 취한다. 도입판례와 참고판례를 중심으로, 거기서 학생들을 논쟁적 이슈로 끌어들인다. 학생의 사고를 단순명쾌하게 함이 목적이 아니고, 복잡한 법적 논변의 세계로 끌어들이고자 함이다. 지향점은 지식총량의 확대가 아니라, 법리탐구와 법적논변을 연마하는 것이다. 로스쿨 학생이라면, 변호사시험의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교수에게 기대할 게 아니라, 자신이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 어떤 사안이든, 단일의 답은 없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법적 논리를 구사할 잠재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내 강의가 이런 요청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는 학생들이 평가할 것이지만, 매 강의에 임하면서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자 노력했다는 자평은 할 수 있다.

#### IV. 과제물—기존 판례를 새로운 관점에서 비판하기

학부든 대학원이든, 그 어떤 강의든 나는 반드시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한다. 쪽지과제가 아니라 각주가 달린 논문형 과제물을 부과한다. 주제 및 방법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것을 권한다. 대학생 이상은 자신의 견해를 논리정연한 논문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은 전문가 중에서도 일류와 이류를 가르는 가장 보편

---

경우 4강의로 쪼개면, 한 강의의 수강생수는 150명을 넘는다. 그러면 한 학기에 한 학생에게 질문이 돌아올 기회가 몇 차례 없다. 반면 학생수가 훨씬 적은 Yale, Stanford의 경우 수업의 밀도, 교수-학생의 친밀도가 훨씬 높아지며, 상호작용도 활발해진다. HLS는 당장의 대안으로 강의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80명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실은 그 수도 매우 많은 것이지만.

적 기준이다. 시험답안지에는 창의적 사고를 담기 어렵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법적 추론을 강조하는 로스쿨이라면, 과제물 논문은 필수적이다. 예년과 비슷하게 다음과 같은 주문을 냈다.

“과제물은 형법각론에서 등장하는 기존의 판례 중 문제판례를 하나 골라서, 그것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논증하고, 자신의 대안판례를 제안하는 것임. 판례 선정은 자유이며, 기존의 판례평석방식을 탈피해도 좋음, 자신에게 특유한 논증을 개발하면 더 좋음. 분량은 10쪽 이내. 정확한 각주 필수.”

과제물의 내용은 중간에 발표해도 좋다고 했지만, 실제 발표는 별로 없었다. 그 주제에 대한 강의에서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면 문제의식이 복돋아지는데, 그 뒤 과제물을 작성하면 진도는 이미 지나가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의 마지막 주에 과제물을 받아 일람하고는 새로운 특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주제선정의 초점이 바뀌었다. 종래 법학도들이 선택한 주제를 빈도별로 볼 때 인신 > 재산 > 사회 > 국가였다면, 이번엔 재산 ≫ 인신 ≫ 사회 > 국가로 재산적 범익에 관한 죄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 재산 중에서도 전통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이중매매, 이중저당, 명의신탁...)은 아예 없었고, 대신 정보, 게임, 전자금융, 컴퓨터 등 현대형 재산이 주요 소재로 떠올랐다. 기업활동과 관련된 신주발행, 경영판단, 부정경쟁, LBO, 전환사채 등은 이전의 법학도들의 과제물 중에는 별로 찾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로스쿨을 통해 배출될 새로운 법조인들은 현대형 거래분쟁을 다룰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앞으로 법조계의 DNA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이 과제물의 제목만 봐도 느낄 수 있다.

둘째, 글의 관심과 관점의 다양함을 느낄 수 있었다. 기존의 판례에 대한 검토는 주로 전통적 법학도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기 글들은 다른 전공의 지식의 토대 위에서, 기존의 판례를 비평하고 있다. 그 접근방법에서도 새로운 것도 적지 않다. 법학도의 글도, 다른 전공출신 학생과의 영향 하에서, 보다 참신한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종래의 리포트와 비교하여 두드러진다. 학생 모두가 새롭고, 색다른 관점을 창조해내기 위해 애쓰는 흔적이 이전보다 뚜렷해졌다. 다양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워내기 위한 과제물의 취지에 대해 학생들은 뚜렷이 공감했다. 물론 과정에서의 고통은 컸겠지만, 그만큼 성과에 대해 뚜렷한 성취감을 맛보기도 했을 것이다. 다음은 학생들의 반응 중 하나를 뽑아낸 것이다.

“우선 가장 좋았던 점은 과제물이었습니다. 누구나 형법각론을 공부하다보면 판례

를 보고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특히 학부 전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이면 ‘이건 말도 안된다’라는 수준까지 의욕이 증폭됩니다. 이러한 의문이 진정한 논문 쓰기의 출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타 과목에서 일률적인 주제를 가지고 레포트를 쓰는 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만, 정말로 자신이 불합리함을 느끼고 조사의 의욕을 느낀 이후에 레포트를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드물게 과제를 수행하면서 희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레포트는 관련 분야의 형법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후에 법학자로서의 자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A)

셋째, 글을 제대로 쓸 줄 안다는 느낌이다. 필요한 자료조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면모가 보이고, 주제에 기울인 정성이 돋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sup>7)</sup> 약간의 지도와 가공을 하면 기성 저널에 발표해도 될 만한 수준의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로스쿨에 들어오기 이전에 논문을 쓸만한 기본적 역량을 익히고 있거나, 로스쿨에 들어와서 향상되었거나, 어쨌든 법논문의 기본을 갖추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 과제물의 수준과 내용에 대하여 그대로 공개하여 현수준을 검증받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것도 교수의 지도와 가공 이전의 원논문의 상태로. 이것을 보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1년말의 학생들의 기본수준, 관심 및 관점의 다양성에 대한 판단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학생들의 과제물들은,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로스쿨 1학년 2학기의 뻑뻑한 강행군의 수업일정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만든 것임을 아울러 감안해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다음은 한 학생이 나에게 보낸 이메일의 일부이다. “이번에 발표하고 또 보고서를 쓰면서 로스쿨에 와서 가장 강한 희열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경

7) “학부시절 전공이었던 철학과 법학을 나름대로 접목시키려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조금 더 완성적인 글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조금씩 형법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부시절 철학과 교수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 생각을 확인받았습니다. 한 교수님이 A4 3장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내 주셨을 때는 ...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젖기도 했습니다.”(학생 B)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참으로 소중하다. 로스쿨에 들어와, 자기 앞에 놓인 법학자료를 소화하기도 전에 주눅부터 들 수도 있다. 더욱이 아직 많은 교수들이 학생들을 법학지식의 정도에 따라 잠재적으로 우/열을 나누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많은 학생들의 주눅감과 이질감은 더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모델, 즉 다양한 전공지식이 법적 지식에 융합되는 체험을 갖게 되면, 자신의 전공은 모두의 지식을 더해주는 소재가 됨을 느끼게 되면, 로스쿨 원생의 다양성은 새로운 가능성의 원천이다. 그럴 때 자신의 독특한 존재는 모두의 자산이다. 로스쿨의 교실이 법학부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법지식의 우/열이 아니라 법지식으로 접근하는 다양성의 길 속에서일 것이다. 교수의 역할은 같은 노래를 반복하는 음악교실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지휘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메일을 보낸 그 학생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발표시간에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한 부분…은 로스쿨 커뮤니티를 통해서 친구들과 공유하고 토론을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2년이 남았다. 이 기간에는 그야말로 수십 과목의 전공선택과목이 열려 있다. 그들은 수많은 새로운 지식의 세례와 도전을 맞을 것이다. 교수-학생과의 대화와 토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동료 간의 대화이다. 그것도 서로 다른 배경의 동료와 주제를 공유하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甲의 입장에서 판단하던 자신이 어느새 乙의 입장으로 사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법학도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를 생활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보다 균형있고 풍부한 인간과 사회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이 법학도들에게 진정한 지적 용광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 - 변호사시험과 평가방법을 포함한 문제들 - 도 제대로 설계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